

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[의견표명]

□ 민원 제목 : 세외수입 체납 무효에 따른 압류의 해제 요청

□ 신청 취지

- 실제(차량)없는 차량등록원부에만 의한 압류는 무효이고, 그 무효에 터 잡아 시행한 부동산에 대한 대체 압류 역시 무효일 것임으로 토지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중지와 체납 과태료에 대한 결손처분 요청

□ 피신청인 등의 주장

- 신청인의 주장, 추측 등을 참고하는 등 객관성(근거)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기 곤란함

□ 사실관계

- 신청인의 운송면허 양수양도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, 과태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정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“당초 인허가 및 과태료 관련부서”(교통정책과 및 차량등록사업소)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함

□ 판단 및 결론

- 화물운송차량 폐차일 이후 부과된 검사위반 과태료는 정당채권으로 보기 곤란함으로 압류채권에서 제외시키고, 나머지 채권도 그간의 부과경위(체납처분 지연 및 부당 양도양수에 따른 정리)등과 신청인의 신체장애 및 질병 등을 감안하여 관계법령에 감경 방안이 있는지 재검토 할 것을 의견표명함